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8
----------	------

제출년월일 : 2010. 8.  
제출자 : 충주시장

## 1. 제안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재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844)에 따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신규투자 및 신규 고용시 고용보조금을 받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4. 기타 참고자료 : 덧붙임

- 덧붙임:
1.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타참고자료 (관계법령)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 충주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이전 이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면제)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